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7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이용우·장철민·정준호
손명수·김남희·박 정
박홍배·민병덕·이학영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공용·공공용 목적에 해당돼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목적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조성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법 시행 이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질개선과 농지 보전·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